

# 혜정박물관 규정

개정 : 2008.02.25

제 1 조(목적)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(이하 “박물관”이라 한다)의 사업,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소재지) 박물관은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내에 둔다.

제 3조(설립목적) 박물관은 혜정선생이 본교에 기증한 유물 및 자료에 대한 전시, 역사적인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등을 실시하여 역사학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본교의 위상을 높이는데 설립목적이 있다.

제 4 조(사업) 박물관은 제3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기증유물의 보존·관리 및 전시
2. 유적의 발굴 조사 및 유물의 수집
3. 박물관 소장 자료에 대한 연구
4. 공개강좌·강연회·전시회 등 각종 교육 및 학술행사 개최
5. 조사보고서·박물관보·소장품목록 등 간행물의 발간
6. 국내외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교류
7. 기타 박물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 5 조(조직) 박물관에는 박물관장, 학예연구실, 행정실, 운영위원회, 자문위원회를 둔다.

제 6 조(박물관장) ① 박물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며, 박물관의 제반업무를 통괄한다.

제 7 조(학예연구실) ① 학예연구실에는 실장과 전문학예연구원을 둔다.

② 실장은 전문학예연구원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.

③ 기증자료의 연구, 전시 및 관리를 위해 연구부, 관리부, 교육부를 두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8 조(행정실) ①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.

② 행정실에는 행정실장을 두며, 박물관의 행정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다.

제 9 조(운영위원회) ①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혜정박물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유물 및 기증자료의 전시에 관한 사항
2. 유물의 구입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5. 본 규정의 개정 및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규칙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6.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본교 교직원 또는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관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,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⑥ 박물관의 직원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.

제 10 조(자문위원회) ① 본 혜정박물관의 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관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③ 자문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, 본 박물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저명한 재계 및 교육계 인사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.

④ 자문위원회 임기는 5년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연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.

제 11 조(소장품 관리 및 변상조치) ① 관장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나 자료의 현황목록을 사무처장에게 송부하여 등록하도록 한다. 단, 소장품은 관장의 책임하에 보관 및 관리하도록 한다.

② 박물관의 소장품은 박물관외로 반출 할 수 없다. 다만, 박물관 외에서의 전시 등 박물관외 반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관장은 소장품이 파괴 또는 오·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책임있는 자에게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변상의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2조(소장품 전시) 소장품의 전시 방법 및 절차, 관람 준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 13조(재정 및 회계) ① 박물관의 재정은 본교 지원금, 외부지원금, 국내외 기관의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② 본 박물관의 예산운영은 본교 예결산 규정에 따라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 및 운영한다.

제 14조(보칙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본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#### 부 칙

본 규정은 2008년 2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